

단 보

아르헨티나 광업법규 및 투자여건 개요

이 한 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기반정보연구원

Introduction to the Mining Regulations and an Investment Conditions in Argentina

Lee, Han Yeang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서 언

중요한 자원국가를 대상으로 외국기업이 광업분야에 투자하려고할 때 유망 광화대를 선점한 후 현지의 광업법규 및 투자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심각한 실수를 피할 수 있다. 2006년 산업자원부 중남미 자원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를 약 한달 간 방문 조사하여 취득한 정보와 외교통상부 남미자원협력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역 광업 투자에 관심을 가진 기업들과 관련 지질학자들에게 유익한 참고자료로 응용되길 바라면서 광업관련 법규 및 투자여건에 관해 간략하게 기재하여 도움을 주려한다.

광업 관련 법규

광업법(Código de Minería)은 광물 소유권의 정의, 취득 및 유지 조건등과 광산 소유권 박탈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고 헌법 제 75조 12항에 의하면 광업법은 아르헨티나에 하나만 존재하며, 광물 소재지에 따라서,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 각 주정부의 경우는 광산 소속기관에서 주 광업법을 재정하여 적용 중이다. 광업법은 1887년에 제정되어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개정은 1995년에 개정된 제 24,498호(광업의 활동법) 및 제 24,585호(광업 활동을 위한 환경 보호법)이며 그 외에 중요한 법으로는 법률 제 24,196호, 제 24,296호, 제 24,498호, 제 24,224호, 제 25,585호, 제 24,523호, 제 24,228호 등이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계

각 주정부 관할 안에 있는 광물 자원을 포함한 모든 천연자원은 주정부의 소유로 인정하는 헌법 제 124조에 의해 광물자원에 대한 모든 관리 업무의 책임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에 있다. 즉, 연방정부는 광업 관련 국가적 정책 수립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각 주정부는 이에 맞는 세부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광물과 광산에 대한 근본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방정부의 경우, 해당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각 주정부에 속해 있어, 소유권은 주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는 2003년 말부터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소유권이 이관되었기 때문으로 미탐사 지역, 해외투자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입찰 등에 관해서는 관심지역 소속 주정부에서 알아보아야 한다.

광물 소유권

광업법은 소유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광물은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첫 번째 카테고리에는 주요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고체 연료 광물, 원천지열로써 형성된 광물이 포함된다. 이 경우, 토지 주인이 아닌 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진다(발견자는 주정부에 광업권을 요청함으로써 권리를 가지게 됨). 두 번째 카테고리에는 첫 번째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금속 광물과 염전, 초석, 탄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권은 우선적으로 부지소유주에게 돌아가나 만약 부지소유주 본인이 직접 개발하기를 원하지 않고 제

*Corresponding author: hanlee@kigam.re.kr

삼자가 개발하기를 원할 경우 권한을 양도할 수 있다. 또한 강가나 냇물에서 채취하는 금속과 보석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테고리에는 건축용 암석들로 부지소유주만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카테고리의 금속 광물의 경우 보통 부지소유자와 자원개발권자가 다르므로 양자는 협상을 통해 부지를 임대하든지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법으로 부지 소유자는 개발권자에게 그 부지사용 및 관련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야 하며 개발권자는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개발권자가 부지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개발권자가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부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광업권 취득 절차 및 요건

광업권(탐사 및 개발권)을 얻는 절차는 광업법 요약본에 나와 있으며 각 주정부 광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주정부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한 직접적으로 광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아르헨티나에서 광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광업권을 허가 받아서 직접 탐사 및 개발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탐사 전문업체의 탐사권을 매입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미 생산하고 있는 광산의 지분을 구입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각 주의 주정부 회사가 이미 광업권을 취득한 곳에서 해외 파트너를 찾는 국제입찰에 공모를 하는 것이다.

탐사권의 면적은 개별로 최대 10,000 ha까지 소유할 수 있고, 신청할 관련 부지는 Gauss-Kruguier 단위로 각 모서리의 좌표가 표시되어야 하며 각 주마다 개인당 20개 이상의 탐사권을 소유할 수 없다(최대 200,000 ha). 채광권을 취득한 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개발권 임대료 납부: 광물 카테고리 및 개발 지역 단위(크기)마다 다르지만 연간 최대 800백으로 약 300불이 안되는 미미한 금액임 (하지만 2006년 7월 현재,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국회에서 논의 중). ② 최소한의 투자: 개발권자는 최소 연간 임대료의 300배 이상을 개발비로 투자해야 함. ③ 개발 중단: 4년 동안 탐사나 개발 또는 생산이 중단될 경우, 관련 기관은(주로 주정부) 채광권자에게 재투자 계획서를 요청하며 동 계획서는 5년 내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에 3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개발권을 박탈당하며, 다만 ①번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광물 가격의 하락으로 일정기간 프로젝트를 중단할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개발권을 박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탐사나 개발권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서를 관련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주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최대 생산액의 3%로 법으로 규정된다.

투자여건

1993년에 발효된 외국인 투자법(제 21,382호)은 아르헨티나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나 업체에 적용되는 법으로 내국인과의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 의해 내국 투자자들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외국 투자자들은 이익의 해외 송금이 가능하며 2001. 12월에 있었던 경제 위기로 외환 반출을 사실상 금지했던 때에도 광업 부문은 이미 투자가 진행된 기존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한 예외를 허용했으며 다만 새로운 프로젝트의 경우 송금 중단 조치를 취했으나 그 후에 대형 프로젝트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완전 폐지되었다.

<광업법상의 인센티브>

- 광업법(Código de Minería) 제214조에 의하면 광업권을 부여한지 5년 동안 기계설비 및 인프라 시설정비, 차량, 채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되어있음.
-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해 탐사 투자 인센티브로는 탐사비용 관련 VAT를 12개월 후에 환급하고 기초 탐사 및 타당성 결정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소득세에서 2중으로 차감하여 100% 공제함.
- 제8조에 따르면 채굴과 생산의 경우, 장기간의 광권 계약을 보장함과 동시에 30년간의 조세 안정 혜택을 받음. 즉, 그 기간 중 세율 인상 및 새로운 세금의 적용을 금지함.
- 제13조에 의해 가중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기계, 시설물 및 차량 같은 고정 자산의 경우 3년 동안 33%를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장비와 기초 인프라 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60%, 20%, 20%의 비율로 감가상각할 수 있어 소득세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수입세 면제(제21조): 투자 자산, 장비 부품 및 일부분의 자재의 수입세를 면제함.
- 자산세 면제: 25,063법 3조에서는 24,196법에 의해 광업투자등기소에 등록된 업체들이 소득을 얻기 이전까지는 자산세를 내지 않아도 됨.

외국인 투자 현황

해외 투자 회사로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기업들이 있으며 대형 프로젝트는 Xstrata, Barrick, Anglo Gold, Northern Orion, Falconbridge 등이 추진하고 있으며 2005. 12월 통계로 총 100개의 해외 기업이 진출해 있다.

중국기업은 A Grade Trading이라는 회사가 2004년 Río Negro주의 Sierra Grande에서 철 생산에 들어갔으며 총 2천 5백만 미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고 광업 관련 중국 회사들의 방문이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JICA 및 MMAJ(Metal Mining Agency Of Japan)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아르헨티나의 광업 부문 잠재력을 조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에 걸맞는 투자 활동은 보이지 않았다. 현재 La Rioja주에서 일본의 미쯔비시가 캐나다의 Golden Peak사와 공동으로 탐사 작업 중이며 일본 정부 국영기업인 JOGMEC사가 San Juan주에 위치한 Vicuna 금·은 광산에서 캐나다의 Tenke Mining사와 공동으로 초기 채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해외 투자시 고려요소

아르헨티나는 광물 분야 내부수익률이 금 세계 2위, 동 세계 3위이며 광물 개발 투자 기회도가 세계 2위로 매력적인 광업 분야 투자시장이다. 미탐사 지역이 75%로 많은 잠재력을 지녔는 바, 우리나라의 6대 전략 광종 중의 하나인 동, 아연, 우라늄 등의 탐사 분야에 공동투자 형식으로(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 진출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점으로는 광업의 경우, 광업권 자체에 대한 국제 입찰은 실시하지 않고 해외파트너를 찾는 입찰만 실시하기 때문에 생산 중인 광산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관련 정보를 광업종사자들과 관련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나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는 구하기가 힘들다(정부는 광산개발을 직접시행하지 못하며 민간기업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부기업을 설립해야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예로 Santa Cruz주의 Fomicruz가 있다).

광산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탐사권의 소유주가 없는 지역의 탐사권을 취득하여 탐사부터 시작하여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탐사권을 가진 탐사 전문업체의 탐사권을 매입하여 탐사 및 개발을 하는 것과 세 번째 이미 탐사를 시작했거나 생산 중인 광산에 지분을 매입하여 공동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정부 회사나 민간 기업의 공식 혹은 비공식 국제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관련 정보 취득의 문제는 상존한다. 현재 해외 파트너를 찾는 국제 입찰 공모는 Santa Cruz주의 주정부 기업인 Fomicruz가 유일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것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 있지만 투자자가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Bajo la Alumbreira와 Veladero의 경우처럼 개발회사가 200 k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고 수출 항구를 재 정비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환경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주정부는 Chubut, Río Negro 그리고 Mendoza주로 특히 Chubut주의 경우, 캐나다의 Meridian Gold사가 금 광산 프로젝트에 1억불을 투자하려고 했으나 Esquel이라는 관광도시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주정부는 Esquel 지역에 광업활동을 3년간 금지시켰다. Mendoza주의 경우도 농민들의 반대로 90일간 광업 활동을 금지한 적이 있으며 이 3개주에서의 광업 활동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 3개주와는 반대로 Salta와 San Juan의 경우는 대단히 시장 친화적인 주로 Salta의 주지사는 석유생산주정부협회(OFEPHI)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기업하기 쉬운 정치 및 경제적 환경을 Salta주에 조성하고 있으며, San Juan주의 주지사는 광물 엔지니어 출신으로 광업 부문 해외 투자자들 모집에 노력하고 있다.

30년간 조세 안정 혜택을 부여하는 장점은 오직 2002년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 프로젝트에 국한되어 있고, 광물 수출세는 10%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광업관련 수출 유망 기자재 관련, 한국 기업의 중장비는 A/S 문제로 진출이 어려워 보인다. 현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입 기자재는 CAT, Komatsu, Liebherr, Astra, Ingersol Rand, Atlas Copco, Scania 등으로 일부 대형 광업회사들은 국제 입찰이 아닌 Invite 형식으로 구매하므로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직접 접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 언

아르헨티나 광업법은 위에서 언급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광물자원 소유권, 개인 광물소유권, 광업권 취득절차 및 개발요건을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기업은 이러한 광업법규를 잘 숙지하여 투자 시 심각한 실수를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외국기업들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기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기업들인 Xstrata, Barrick, Anglo Gold, Northern Orion, Falconbridge 회사들이 진출해 있으며 광업관련 정보획득에 경쟁이 치열하다. 외국인 투자여건은 이익의 송금 문제 등 일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국토자체가 크고 미개발지가 많아 특히 도로, 물, 전기 같은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여 최종 타당성조사와 개발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사 사

이 단보에 수록된 정보와 자료를 허용하고 취합을 도와준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부설 남미자원협력센터의 김선정연구관님께 많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현

지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시는 황의승 대사님, 추종연 총영사님, 전근석 서기관님께도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아르헨티나 투자진흥 에이전시 www.inversiones.gov.ar
 아르헨티나 법률정보 사이트 www.infoleg.gov.ar
 아르헨티나 통계청 (INDEC) www.indec.gov.ar
 아르헨티나 광업국 관련자료 www.mineria.gov.ar
 아르헨티나 지질연구소 www.segemar.gov.ar
 외교통상부, 2006, 남미 10개국 자원 현황

2006년 10월 28일 접수; 2006년 11월 28일 채택)